

(國)(外)(事)(件)

聯合商標의 類似性判斷

<日本東京高法 1980年 6月 18日 判決, 1980年(行)第21號>

1. 原告: 소니(株)

2. 被告: 特許廳長官

3. 判決主文

特許廳의 1971年 審判 第754號 事件에 대한 1979年 12月 5일의 審決을 取消한다.

4. 事件概要

X인 소니는 1969年 1月 14일 「SO NYLINE」이라는 유럽文字의 左橫書로 된 商標에 대해 第24類의 玩具, 人形, 娛樂用品, 運動具, 釣具, 樂器, 演奏補助品, 蕃音機(電氣蕃音機 除外), 테코드, 이클 부품 및 附屬品을 指定商品으로 하여 登錄 第511,322號 商標外 41件의 登錄商標와 聯合商標로서 商標登錄을 出願한 바 1970년 11월 5일 拒絕査定되었으므로 1971년 1월 9일에 審判을 請求하였다.

그러나 1979년 12월 5일에 이 심판의 청구는 成立되지 않는다고 審決하여 그 審決據本이 1980년 1월 9일 X에 送達됨으로써 이를 不服한 拒絕不服審決取消를 청구하는 本訴에 이르렀다.

本件 審決理由의 要旨인즉 本願商標와 聯合하는 상표로서 接記한 各登錄商標은 서로 構成되어 있으므로 어느것이나 單純한 造語로서의 「소니」의 呼稱이 생긴다.

그러나 兩者에서 생기는 「소니라인」과 「소니」의 兩呼稱은 설사 「소니」의 部分이 같다 하더라도 全體로서는 「라인」의 音有無에 의해 語韻■가 顯著히 달라지게 되어 充分히

聽別하게 할 수 있으므로 兩商標는 호칭에서 類似하다고는 할수 없으며 또 觀念上으로 比較할 것도 없다.

또한 兩者的 緜字 및 書體가 서로 다르므로 外觀上混同할 念慮도 없다. 따라서 非類似商標이므로 本원상표는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고 심결한 것이다.

5. 判決要旨

『본원상표에서 「소니」의 호칭이 생기느냐의 與否를 考察컨대 論理의 全趣旨에 의하면 本願商標中의 「SONY」의 文字部分은 그 優秀한 性質이 있는 트렌지스터라디오, 테이프 테코드 등이므로 本原商標出願前부터 日本國內는 물론 각國에도 널리 알려진 소니(株)의 製品에 使用되고 있는 著名商標로 表示되고 있음이明白하다.

따라서 本원상표의 指定商品去來者, 需要者는 本원상표에 接할 경우 一見하여 곧 「SONY」의 文字부분에 소니(株) 혹은 그 系列에 속하는 자에 關係되는 商品이라는 강한 印象을 받아 이에 注視하게 된다고 할수 있다.

이에 대해 「LINE」의 文字부분은 系列, 系등을 가리키는 格別하고 限定的인 意味를 갖지 않는 諸般分野에서 普通으로 사용되는 用語로써 疎薄한 印象을 주는데 그친다고 해야한다.

그렇다면 本원상표에서 「소니」의 호칭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다. Y는 같은 書體, 같은 크기, 같은 間

隔으로 連書하여 되는 本원상표는 전체로써 「소니라인」이라고 단숨에 읽히게 되므로 本원상표에서 一連으로 「소니라인」의 호칭만이 생긴다고 主張하게 된다.

分明히 本원상표에서 일련으로 「소니라인」의 호칭이 생긴다는 것도 是認하게 되나 그렇다고前述과 같은 特段의 去來實情下에서 本원상표가 소니의 호칭이 생기지 않는다고는 할 수가 없다.

위와 같은 이상 本원상표에서 일련으로 「소니라인」의 호칭만이 생긴다 하여 이를前提로 本원상표와各登錄商標가 非類似하다고 한 심결은 餘他의 点에 대해 判断할 것도 없이 商標類否判断을 그르친 違法의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취소를 允할 길이 없다.』고 判示하기에 이르렀다.

6. 解說

本判決로서 SONYLINE과 SONY가 연합상표등록을 반기 위한 유사성의 有無에 대하여 심결과 판결이 전혀 正反對의 판단을 한結果가 되었다.

그러나 實務의으로 연합상표의 聯合要件으로서 類否判断이 연합의 연합이라는 이론과 連鎖方式으로 판단하는 이상 앞으로도 본 심결의 立場이 계속하게 된다. 本訴判示로써 연합상표의 유사판단에 대해서 再檢討의 機會가 되리라는 見解들이 적지 않다.